# (재공고)과 업 지 시 서

광주충장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「충장4-5가 신활력 프로젝트」수 행 용 역

2025. 3.

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 추진단

# 과 업 지 시 서

# 광 주 충 장 상 권 상 권 르 네 상 스 사 업 「충장4-5가 신활력 프로젝트」수 행 용 역

## 과업 개요

## 1. 과업목적

- 가. F&B중심의 로컬플레이어 유치를 통한 상권 경쟁력 강화
- 나, 공용부 환경조성을 통한 사업의 기반 환경 조성
- 다.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앵커조직 구축

## 2. 과업수행 기본방향

## 가, 대상지 현황분석 및 기초환경조사 실시

- 사업 대상지 상권의 유동인구의 특성 및 업종 현황분석
- '24년 사업지 및 대상자와의 연계 및 확장을 위한 기초환경 분석

## 나. F&B중심의 로컬플레이어 유치

- 기 영업자 및 로컬브랜드 운영자 대상의 공개 모집 방식 운영
- 객관적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경쟁력 보유한 플레이어들의 유치
- 선정자 입점을 위한 대상지 확보 및 매칭
- 입점 대상지 내외부 화경조성에 따른 지원

## 다. 공용부 환경 조성안

- 사업 대상지 공용부에 대한 환경 조성
- 사업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따른 컨셉 제시 및 조성
- 전체 상권 구간을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일관된 아이덴티티 형성

## 라. 앵커조직 구축

-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간 앵커역활 수행조직 조직화
- 1차 참여자 및 2차 참여자들과의 협업모델 발굴 및 운영
- 참여 플레이어들과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모델 마련 및 사업화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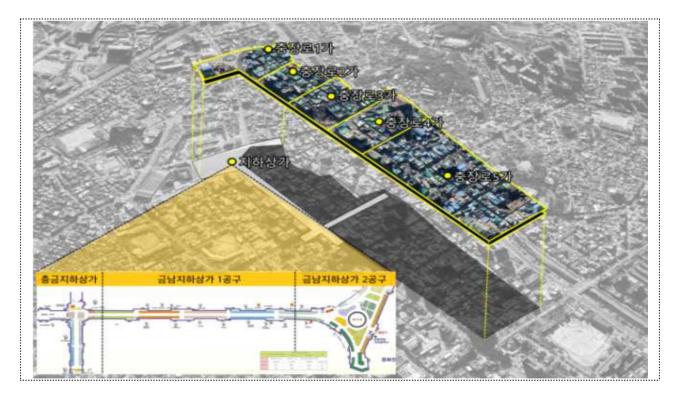
## 마. 이슈화 방안

- 전체 공간 조성 및 사업 추진의 과정에 대한 외부 이슈화 방안 강구
- 관련분야의 샐럽등과 협업을 통한 초기 이슈화 및 객관적 사업추진 예)유사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편승등 방법 강구
- 바.상기 기본 과업수행의 방향과 제안사의 제안내용 및 추가 아이디어를 실제 적용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내용

### 3. 과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「충장4-5가 신활력 프로젝트」 수행 용역

나. 대 상 지 :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~5가 일원



다. 사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'25.12.26까지

라. 사 업 비 : 150,00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## 과업 세부내용

## 가. 대상지 현황분석 및 기초환경조사 실시

- 사업 대상지 상권의 유동인구의 특성 및 업종 현황분석
  - ·과업 수행시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 특성 및 업종현황 분석
  - ·분석을 위한 측정의 방법, 측정계획, 측정지표 등을 제안
  - ·그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연구보고서의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수록
    - → 각 지표에 대한 도식화, 계량화, 정량화 등 진행
- '24년 사업지 및 대상자와의 연계 및 확장을 위한 기초환경 분석
  - ·'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'24년 사업지 및 대상자와의 연계방안 제시
  - ·연계 및 확장을 위한 환경 및 특성에 대한 분석 및 방향성 제시

## 나. F&B중심의 로컬플레이어 유치

- 유치방향
  - ·1차 입점되어 운영중인 권역 인근으로 확장 추진
  - ·1차 입점 F&B콘텐츠와 연계 가능한 F&B업종 대상 유치 활동 진행
  - ·'24년 입점 로컬플레이어 현황



전통주 BAR



스포츠 펍



팝업스토어

## - 유치활동 및 선정

- ·1차 지역내 로컬 F&B플레이어들과의 협업 및 입점의향 타진
- ·지역내 핫플레이스 및 검증된 영업력 소유 플레이어들과의 협업 추진
- ·2차 공개모집을 통한 대중적 플레이어의 모집 진행
- ·입점자 선발평가
  - → 사업의 공정성과 참여자들의 확신성을 위해 전문가 평가 진행

- → 외부전문가, 상인회, 지자체, 추진단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·1팀당 인테리어 및 아웃테리어 해당 예산 2천만원 한도 간접 지원
- 입점 대상지 파악 및 현약
  - ·사업 대상지내 공실점포대상 입점 대상지 현황 파악
  - ·임대료 인하 및 상생협력 건물주 모집 및 상생협약 도출
  - ·사업기간 종료후 악의적 폐점 및 신의성실 미이행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

## 다. 앵커조직 구축

-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간 앵커조직을 구성
- 앵커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제시
- 1차 참여자 및 2차 참여자들과의 협업모델 발굴 및 운영
- 참여 플레이어들과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모델 마련 및 사업화 추진

## 라. 공용부 환경 조성

- F&B입점 구역 인근을 대상으로 컨셉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한 기본 환경 연출
  - ·공간연출 컨셉 및 디자인 추진안 제시
  - ·확정안을 기반으로 환경조성
  - ·전체 구역내 외부 파사드, 바닥 환경, 상층부 감성 연출 등 구체적 실행
  - ·환경정비 및 기반조성의 추진안을 제안하고 제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감도등 도식화 자료를 수록
  - ·소규모의 환경정비 및 기초 기반조성등이 되도록 방향성 유지
- 공간 조성의 예시



※상기 이미지는 공간조성에 따른 기본개념이며 제안시 소규모의 기반조성에 따른 별도의 제안과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
## 사. 이슈화 방안

- 전체 공간 조성 및 사업 추진의 과정에 대한 외부 이슈화 방안 강구
- 관련분야의 샐럽등과 협업을 통한 초기 이슈화 및 객관적 사업추진

## 아. 과업내용 집계표

	항목	추진사항				
① 과 업 추 진 내 용	및	·상인회 의견수렴 1회 이상 진행 ·사업 대상지내 상인대상 공청회 1회 이상 진행 ·사업대상지 상권 대상 상권 환경분석 및 보고서 작성				
	플레이어	·대상자 유치활동 및 간담회 등 개최 ·공개 모집에 따른 현수막 게시 및 SNS홍보 등 일체의 홍보 활동 ·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에 대한 평가 진행 ·선정자 대상 인테리어 지원금 집행 및 관리(3팀 이상 모집)				
	<sup>용</sup> ©공용부 ·공용부 환경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환경조성 ·외부파사드, 바닥환경, 상층부 감성연출 등 공용부에 대한 환경조					
	⊜이슈화	·관광분야 인플러언서 1회 이상 섭외 프로그램 운영				

## 4.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가. 상기 과업 세부내용상의 과업은 권고사항이 아닌 필수 수행사항을 수록하고 있음
- 나. 따라서 가급적 제안서상에는 상기 과업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최종 낙찰자 협상과정에서 보완 및 재반영하여 최종 제안사의 제안 내용으로 반영한다.
- 다. 다만 수량과 시기, 횟수와 방법 등의 사항은 추진단, 동구청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다.
- 라.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반드시 전체 과업 수행에 따른 세부항목 별 산출내역(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영역별 기초산출금액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합산 금액을 준수해야 함)을 기록하여 평가위원들의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마. 제안서에는 제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여 조성 컨셉과 제 안사의 조성 방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조감도 등의 시각화 자료를 수 록하도록 한다.

### 5. 기타 수행사항

- 가. 본 과업에는 과업추진에 따른 개념의 정리, 상권에 대한 분석, 상권 대상 지 구성원들과의 의견처취,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생조직의 설립지원과 운영 지원, 사업 대상지에 대한 기초 기반시설등에 필요한 일체의소요비용, 상권내 공유공간 운영에 따른 일체의 업무추진 및 소요비용이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의 모든 사항에 대한 수행사의실행계획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간 설치 및 조성시 배출되는, 혹은 기 설치물의 철거로 인해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은 수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.
- 다.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추진단과 협의하여 이행하도록 한다.
- 라. 천재지변등에 대한 안전대책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추진단과 협의하여 이행하도록 한다.
- 마. 상인회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
  - · 상인회 의견수렴은 착수보고 이전 우리 추진단과 협의하여 상인회별 최소 2회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.
  - ·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시안에 대하여는 상인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.
  - · 착수보고회 또는 그 이전 우리 추진단과 협의하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.
- 바. 구조물 시공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설계시 구조안전성검토를 받고 그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

사. 모든 디자인안에 적용되는 상권의 대표 상징체계는 우리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브랜드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디자인 적용 자료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관련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행해야 한다.

## 6. 유의사항

- 가. 저작권 관련하여, 문제의 소지를 사전 해소
  - · 지식재산권 등 법적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검토
  - · 타 디자인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추진단은 수행사로 하여금 기본 디자인부터 시안을 다시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반 비용은 수행사에서 전체 부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.
- 나. 제안서 작성 시 모든 사항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제안해야 하며 선정 후 실행 불가함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선정을 철회하고 2순위 업체 혹은 재공고를 통해 수행사 모집을 다시 할 수 있다.

## 7. 주요일정

추진내용		3	4	5	5월		6월		7월		8월		9월		10월		11월		12월	
		월	율	2	4	2	4	2	4	2	4	2	4	2	4	2	4	2	4	
추진계획수립 및 검토(협의회)																				
나라장터 입찰 등록 및 수행사 모집																				
제안용역 심의·평가																				
구성원 및 대상지 설명회(의견 청취)																				
참여자 모집 및 평가																				
환경구축																				
결과 보고																				

※ 상기 일정은 추진단의 기본 계획이며 구체적 실행 일정은 제안사의 착수보고시 제출된 추진일정표를 따름

## Ⅲ 일반 수행지침

## 1. 일반 사항

- 가. 본 과업지시서는 당해 사업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이행하되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 추진단의 본 사업 담당부서 (이하 '추진단'이라 한다)가 별도로 지시하거나 추가로 협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에 따라 처리한다.
- 나. 추진단은 과업이행과 관련하여 수행사가 요청하는 주요 자료를 제공, 과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다. 수행사가 과업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및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부담한다.
- 라, 과업이행에 있어서 자문 등 진행 과정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계약이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.
- 마.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합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수행사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·수정·변경하여야 한다.
- 바,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며, 일체의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2. 착수계, 예정공정표 등 세부 집행계획의 제출

가. 계약 체결시 지정된 착수일까지 과업에 착수하며, 과업이행계획표 등 과업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과업의 변경

- 가.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된 경우,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추진단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나. 과업이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필요시 추진단과 협의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다.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4. 과업 진행 및 결과 보고

#### 가. 수시보고

- 1) 과업기간동안 추진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착수, 중간, 결과보고
  - 착수보고
    - ·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 구성계획 및 일정표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토대로 진행한다.
    - · 착수보고는 상권활성화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동구청에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 - 중간보고

·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업의 중간 진행 결과에 대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동구청에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 - 최종보고

- · 과업완료 10일 전까지 과업 수행의 모든 과정과 최종 결과를 토대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동구청에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※ 보고서 양식은 자율이며, 최종보고서 제출 전 추진단과 협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- ※ 보고서가 요구 수준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 즉시 보완하다
- ※ 계약상대자는 세부 공정 시작과 완료 시, 업무 수행 방법 변경 시, 위험요소 발견 시 등 사업 관련 주요 변경, 특이사항을 추진단에 알린다.

## IV 기타사항

## 1. 수급인의 책임 및 업무

## 가. 책임 범위

- 1)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라 할지라도,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수정·조치한다.
- 2)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.
- (3) 수급인의 (발주자에 행하는) 보고, 통지,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## 나. 지시의 이행

• 과업 수행에 관하여, 감독원이 책임기술자의 지시부를 통해 지시한 과업 수행 관련 사항은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다.

## 다. 관계기관(부서) 협의 등

- 1)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과 관련하여, 감독원이 그 내용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(부서)와 업무협의를 진행한다.
- 2)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협의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3)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회의록을 작성하여 준공 시 종합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.

## 라. 공정관리

•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・관리한다.

## 마, 문서의 기록 비치

•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(부서)과의 협의사항,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·비치하며, 감독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.

## 바. 안전관리의 의무

• 수급인은 과업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, 과업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.

### 사. 법률준수의 의무

-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.
- 아. 간판 정비 등 시설물 작업 중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
  - 사업수행자가 지정·배치한 현장대리인, 현장 요원, 안전관리자, 품질 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한다.
  - 철거·제작 및 설치 시행에 있어 통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인이 가장 보기 좋은 위치에 현장 작업장 안내인을 배치하여 현장 작업장 안내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갖춘 뒤, 안전봉으로 통행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는 등 작업을 안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.

## 2. 인력관리 및 사업시행

## 가. 조직 및 인력관리

- 1) 계약상대자는 사업 총괄 책임자를 확정 및 현장관리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관련 상세내역(조직도,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현황)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2)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음(임의교체불가)

## 나. 사업의 시행

- 1)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
- 2)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, 추진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3) 용역수행은 해당 분야의 경험 및 조형물 설치 등 실행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며, 과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주민설명회, 사업설명회, 홍보, 조형물 설치 및 조율 등의
- 4) 날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사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
- 5)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만일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를 해야 함

#### 3. 설명회 및 보고회 등

- 가.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, 관련기관 등의 보고요구가 있을 시는 사업 내용 을 보고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.
- 나.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수렴된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다. 과업수행 보고회

-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1회 이상의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,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, 그 지시된 사항의 과업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
-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5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,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정 • 보완하여야 한다.

### 4. 용어의 해석

•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되,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.

## 5.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

- 가.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·허가 지연, 민원 발생,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,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나.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완료할 수 있으며, 부분 완료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.
- 다.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6. 과업 및 설계내용 변경 조건

- 가.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 일반조건에 따른다.
- 나.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, 과업내용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범위, 내용, 비용,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수 있으며, 사업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.
- 다.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1)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
  - 2)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·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지연, 각종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
- 3)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- 4)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
- 5)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
- 라.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아래의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과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.
  - 1)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
  - 2) 과업수행기간 중 관련법령·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,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- 3)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
  - 4)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
  - 5)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
  - 6)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와 협의된 경우
  - 7) 기타 우리구에서 인정하는 사항
- 마. 위 항의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,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,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.
- 바. 본 과업의 수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만료 30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
## 7.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

- 가.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- 1)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

- 2)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3)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- 4) 과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
- 5) 과업참여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
- 6)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
- 나.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 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과업수행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
## 8. 성과품의 소유 및 제출

- 가. 용역결과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또는 판권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된다.
- 나. 용역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소유로 하고, 용역 완료와 동시에 용역 결과 성과물을 용역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용역발주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- 다.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소유로 하며,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- 라.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용역수행자(과업참여자)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마.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9. 보안사항

- 가.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"보안업무규정"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용역수행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, 용역참여자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책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3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, 참여 인력 및 기술진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용역수행자는 용역물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) 용역수행 참여자 명단 제출(인력투입계획서)
  - 2)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,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.
- 라. 타인의 권리 침해,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· 형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은 용역수행자 가져야 한다. 또한, 용역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.
- 마.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,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바.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,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- 사.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아. 기타 용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자.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지키고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는다.
- 차. 용역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용역발주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카.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내용은 과업 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, 외부유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10. 하자보수 관련

- 가. 시공된 결과물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은 3년(무상)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즉각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. 단, 귀책사유가 발주처의 관리부실이나 운영상의 소홀, 관람객 등의 불찰일 경우 유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.
- 나.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,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.
- 다. 기타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## V 성과품 납품

### 1. 성과품 작성방법

- 가.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 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,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다.
- 다. 기초 기반시설물 및 환경조성에 따른 시공 등의 결과물에는 기본설계도 서를 포함하여 사후관리시 참고하도록 하며, 설계도서에는 누구나 이해가 쉽 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, 검토자, 책임기술자 서명(날인)이 있어야 한다.
- 라. 자료는 A4(210mmX297mm) 또는 A3(297mmX420mm)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, 도면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.
- 사.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 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
## 2. 성과품의 저작권

- 가.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이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광주광역시 동구가 소유하며,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- 나. 글꼴, 사진,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 ·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.

## 3. 성과품 납품목록

- 가. 성과품 납품
- 1) 성과품은 최종 성과품 및 심의·회의·보고·협의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.

- 2) 결과보고서에는 상기 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사진자료, 각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,과정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하도록 한다.
- 3) 수행업체는 과업완료 전에 수시보고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· 수정·보완한 결과 등을 포함하여 최종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 보고 시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·보완하여 결과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.

## ※ 본 과업 지시서 문의처

담당자	정재형 사무국장 / E-mail : vivamarket1@naver.com
연락처	T. 062-416-5630 / FAX 062-416-5631

##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 추진단